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(조지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78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25.

발 의 자 : 조지연 · 김태규 · 임이자
우재준 · 고동진 · 박수영
김정재 · 이달희 · 박준태
김상훈 · 안철수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등으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일정한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,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17을, 그 밖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. 이때 공제대상 월세액은 연 1천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음.

그런데 전세의 월세 전환이 지속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월세가 크게 상승하면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, 현행 공제율로는 실제 월세 지출이 큰 청년의 부담을 충분히 보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. 특히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은 높지 않으면서 월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큰 경우가 많아, 이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청년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소득구간별로 상향하여 총
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30을, 그 밖의 경우 100분의
25를 적용하고, 공제대상 월세액의 한도를 1천5백만원으로 확대함으로
써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(안 제95조의2).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5조의2제1항 본문 중 “그 금액의 100분의 15[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(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)의 경우에는 100분의 17]에 해당하는 금액”을 “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1천만원”을 “1천500만원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1천만원”을 “1천500만원”으로 한다.

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: 그 월세액의 100분의 25[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(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)의 경우에는 100분의 30]에 해당하는 금액
2. 제1호 외의 경우: 그 월세액의 100분의 15[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(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

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)의 경우에는 100분의 17]에 해당하는 금액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9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95조의2(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)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(세대주가 이 항, 제87조제2항 및 「소득세법」 제52조제4항·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(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)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 [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	제95조의2(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----- -----

있는 근로자(해당 과세기간에
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
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
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
외한다)의 경우에는 100분의 1
7]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
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
서 공제한다. 다만, 해당 월세
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
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
로 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1 천 500 만 원

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: 그 월세액의 100분의 25[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(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)의 경우에는 100분의 30]에 해당하는 금액

2. 제1호 외의 경우: 그 월세액
의 100분의 15[해당 과세기간
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
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

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세대주의 배우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월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배우자의 월세액에서 그 초과하는 금액을 뺀 금액(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)을 제1항에 따른 공제 대상금액으로 한다.

1. · 2. (생략)

③ · ④ (생략)

(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
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
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
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)의
경우에는 100분의 17]에 해당
하는 금액

②

1천500만원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③・④ (현행과 같음)